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: 2016.05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총 칙

제1조(현장실습지원센터)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입학학생취업처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"본 센터"라 한다)라 둔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 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조 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3조(업무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- 1.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<개정 2020.03.01.>
- 2. 대학 공통 현장실습 운영 <개정 2020.03.01.>
- 3.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<개정 2020.03.01.>
- 4.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<개정 2020.03.01.>
- 5. 현장실습 학생 상담 및 지도 <개정 2020.03.01.>
- 6.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<개정 2020.03.01.>
- 7. 현장실습 지표 관리 〈신설 2020.03.01.〉
- 8.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업무 <신설 2020.03.01.>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 및 임기) ①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담당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현장실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5조 <삭제 2020.03.01.>

제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

제6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20.03.01.〉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〉

제7조 <삭제 2020.03.01.>

제4장 현장실습협력협의체

제8조(현장실습협력협의체) 실습학과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산학 교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혐의·지원하기 위하여 학과별 현장실습협력협의체를 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 <삭제 2020.03.01.>

제5장 보칙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